

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2011. 05. 01. 제정
2013. 01. 24. 개정
2019. 07. 17. 개정
2020. 02. 20. 개정
2020. 12. 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원당초등학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민주적인 학교 문화 실현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8.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원당초등학교 생활 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원당초등

학교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학생의 의무

1. 학생은 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4조 【구성】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 연구, 생활담당 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선도위원회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③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심의(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선도위원회 회의】 선도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 시 선도 위원회 의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아껴 쓰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및 일과 후에도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 【폭력예방】

- ①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4.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④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수개의 조치 병과)의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조치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⑥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수개의 조치 병과 포함)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제13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예회, 운동회,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특별실(컴퓨터실, 영어실, 과학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 【용의복장】

- ① 복장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한다.
- ②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두발을 유지한다.
- ③ 신발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되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비디오,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ライター,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관리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제17조 【 학급 내 봉사활동 】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할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할)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 비품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 【 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 【 양성평등 】 교내에서는 양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 ① 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 보건교사나 교감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는다.

제2절 출결사항

제20조 【 수업일수 】

-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② 전출, 면제, 유예일 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단, 전출, 면제, 유예일과 전이 동일한 경우는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 ③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④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상급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제21조 【 결석처리 】

-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재입·편입·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가.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체험활동(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1회 7일 이내이며,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국내, 국외 통합 30일 이내로 하고 횟수 제한은 없다.
 - *. 연속 30일 미만 토일 제외/ 30일 이상 토일 포함한다.
 - *. 단, 교육감의 별도지침이 있을 시 별도지침을 따른다.
 - 나. 체험학습계획서 및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5. 학교장이 승인한 위탁교육의 경우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7.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8.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
 - 9.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음.

10.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며, 기간 및 횟수는 월 1일로 한다. 생리결석 인정 방법 및 증빙서류는 보호자의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의 확인서로 인정한다.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2.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③ 다음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

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④ 다음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제3항과 아래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등)

⑤ 다음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지각, 조퇴, 결과 처리】

-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단 건강상의 이유로 허락을 받고 보건실에 간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함)
- ② 제20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각, 조퇴, 결과 중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제20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미인정으로, 제20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 ④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⑥ 재입, 편입, 전입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3조 【재입·편입·전입 학생의 출결 처리】

- ① 재입·편입·전입한 학생의 재입·편입·전입 이전 학년의 출결상황은 원적교의 학

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 ② 재입·편입·전입한 학생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재입·편입·전입 이전 원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과 전입 이후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 상황을 합계하여 통계 처리한다. (전입 사이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로 책정하지 않으며 출결 처리도 하지 않음)

제24조 【출석 사항 평가】

- ① 1년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졸업생 수상자 선정을 위한 출석사항 평가에서는 졸업생 시상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수료】 학생이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지각(또는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절 교외생활

제26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7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제4절 정보통신

제28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되 분실 시에는 학교(선생님이나 친구 등)에 책임을 묻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 등교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는 휴대 전화의 전원을 끄며 필요시만 담임 교사의 허가 하에 사용한다. 또한 휴대전화로 인해 수업에 방해가 될 경우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비정상적인 용도(몰래카메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30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1조 【권리와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 【금지활동】 학생 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 【임원】 전교자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제34조 【선출 방법 및 자격상실】 전교 자치회와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자격상실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되 다음을 준수한다.

- ① 전교 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 ② 입후보 및 선거절차 등은 자치회 담당교사의 별도 계획에 의한다.
- ③ 기능
 1. 자치활동의 제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전교어린이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자치회 담당교사의 별도 계획에 의한다.
- ④ 선출
 1. 선출 시기: 학년 초 3월 이내
 2. 선출 방법: 절차에 의하여 후보등록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⑤ 자격상실
 1. 학생자치회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1) 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2)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8호)가 확정되었을 때
 - 3) 1), 2)의 징계처분은 당해연도 처분에 한해 적용한다.
 2. 학생자치회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 받은 날로부터 그 임명을 취소하며 잔여 임기가 1/3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6장 학생 생활지도 및 징계

제1절 학생 생활지도

제35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사고, 등산 사고, 빙판 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내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 ⑥ 교내의 학생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적극 활용한다.
- ⑦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제36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진로교육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과 및 창체 등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 수준에 맞게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제37조 【교외생활 지도】 교외에서의 학생의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하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3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39조 【종류】 학생 포상은 교내시상규정을 준수하여 포상한다.

제40조 【외부로부터의 포상(장학금포함)】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41조 【특별상】 교내, 외 행사 및 기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하며 별도계획에 의거 시상할 수 있다.

제42조 【시상의 결정】 시상의 결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절 징 계

제43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한다.
- ④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⑤ 대상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한다.
- ⑥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징계의 심의】

- ①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 ②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징계의 종류 및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훈육·훈계 : 사안 적발 시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시간에 지도
- ② 학교 내의 봉사: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1일 1시간)
- ③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교육이수: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47조 【징계의 방법】

- ① 훈육·훈계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였을 시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 ②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③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④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⑤ ‘출석정지’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 교육을 받는다.

제48조 【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정화 작업 등 교내 봉사활동
 2. 교재 및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등 교내 봉사활동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3.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4.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⑤ 출석정지
 1.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제49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0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

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1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행사는 성실히 참여하게 하며, 이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책임

제53조 【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학칙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의 모든 시설 및 비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준수하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4조 【학부모의 책임】

- ①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하여 학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 ③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 【교직원의 책임】

- ① 교원은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③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개정방법

제56조 【개정방법】 본 규정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 개정안 발의 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학교장이 결정, 공포한다.

부칙

제1조 【예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을 근거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 선도(징계) 기준안

구 분	내 용	징 계				
		훈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예 질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 법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점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수 업	수업준비, 청소 및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과학실험 수칙 및 체육활동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				
	수업진행 방해, 폭언, 욕설 등을 한 경우	○	○			
근 태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				
	3회 이상 미인정 결과나 조퇴한 학생	○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미인정 결석한 학생	○	○			
약 물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복용한 학생	○			○	
부도덕	절도를 한 학생	○				

행위	상습적으로 절도한 학생	○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퇴 폐 행 위	불량 및 음란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성폭력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집 단 행 위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기타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				
	휴대폰 사용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장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